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41 발의연월일: 2021. 12. 17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용판·박완수

백종헌 • 이채익 • 조명희

지성호・태영호・하영제

홍문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.

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'준수하다'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'지키다'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, 제8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4항).

법률 제 호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"준수하여야"를 "지켜야"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 중 "준수하지"를 "지키지"로 한다.

제11조의3제4항 중 "준수하여"를 "지키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	제8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
과정 등의 설치·운영) ① ~ ③	과정 등의 설치·운영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	4
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	
설치기준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다.	<u>지켜야</u>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계약학과등의 설치 제	제8조의2(계약학과등의 설치 제
한 등) ① (생 략)	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	2
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	
과등의 설치기준을 <u>준수하지</u>	<u>지키지</u>
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	
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	
치를 제한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3(현장실습 운영) ① ~	제11조의3(현장실습 운영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	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	
따른 운영기준을 <u>준수하여</u> 제5	<u>지키며</u>
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	

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